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459
----------	-----

제출년월일 : 1999. . .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정이유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주기 위한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작업장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8-64번지에 둔다(안제2조)
- 작업장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공익법인, 장애인관련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한다(안제4조제1항)
- 작업장은 수탁운영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를 지정한다(안제4조제2항)
- 위탁기간은 3년으로하되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다(안제4조제3항)
- 고용대상 장애인은 파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인원의 10분의1 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안제5조제1항)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8-64번지에 둔다.

제3조(업종) 작업장의 업종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작업장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공익법인, 장애인관련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운영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하되 계약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수 있다

④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 ①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파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인원의 10분의1 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②제1항중 장애인 고용의 결정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수탁자가 결정한다.

제6조(직원)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외 약간 명의 관리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그인원은 최소인원으로 한다.

②작업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급여) ①제5조 제1항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5조제1항중 비장애인과 제6조의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의 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의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승인) ①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1항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의 경우
4. 제8조 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감독) ①시장은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